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354호 2012. 12. 24 (월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1986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 . . . .	2
○ 하동군 조례 제1987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조례 . . . . .	4
○ 하동군 조례 제1988호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채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 . . .	10
○ 하동군 조례 제1989호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15
○ 하동군 조례 제1990호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 . . .	20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2- 6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0차) . . . . .	21
○ 하동군 고시 제2012- 62호	군 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 . . . .	23
○ 하동군 고시 제2012- 63호	국가기초구역 고시 . . . . .	25
○ 하동군 고시 제2012- 64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고시 . . . . .	26
○ 하동군 고시 제2012- 6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1차) . . . . .	30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2- 1067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32
○ 하동군 공고 제2012- 1068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 . . . .	35
○ 하동군 공고 제2012- 1094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 . . . .	36

<b>회 람</b>									
----------------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35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4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86호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1774호 「하동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 &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이 기금의 사업의 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동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lt;삭 제&gt;</p>

## 하 동 군 공 보

( 4 ) 제 35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4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87호

###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하 동 군 공 보

( 5 ) 제 354 호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354 호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 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신·구조문 대비표

( 7 ) 제 354 호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lt;신설&gt;</p> <p>② <u>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비서관 및 비서</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을 하는 경우)</u></p> <p>3. &lt;신 설&gt;</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p> <p>③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1. <u>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3. <u>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4. <신 설>

④ <신 설>

제5조의2 <신 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하동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 4. (생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직권면직) -----  
-----  
-----.

1.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

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

<p>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p>	<p>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p>
--	---

##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35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4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88호

###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 하 동 군 공 보

### ( 12 ) 제 354 호

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354 호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면 고지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4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89호

###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354 호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 하 동 군 공 보

### ( 18 ) 제 354 호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년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하 동 군 공 보

( 19 ) 제 354 호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35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0호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2 - 6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0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14.

###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70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354 호

###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317-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하 동산길 28-8	20070618	신라초부터 조선조 1703년까지 아래된골 이라 불려왔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 로 하동산으로 개명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6-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 촌길 33	20070618	서촌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412-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울 곡길 26	20070618	울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28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칠 성로 59	20070618	도로구간 종점에 위치한 칠성봉이라는 산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430-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양 보로 383	20070618	양보면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을 사용하 여 도로명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8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 당2길 42	20070618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셨던 고운선생 의 영정을 옮겨오면서 붙여진 자연마을명 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903-6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 사길 384-70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 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 천로 102-48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약양면 신성리 531-4	경상남도 하동군 약양면 약 양동로 349	20070618	도로시점이 약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 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740-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 고개로 704	20070618	양보면박달리에서진교면월운리경계에있는 재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85-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 개로 575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 서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66-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 단로 197-18	20070702	하동군옥종면과산청군단성면의첫글자를사 용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17-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미 법마을길 134-4	20080402	미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1091-5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 대2길 137	20080402	법정리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 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7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 양로 725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 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97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 학로 1267-54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 동으로 가는 도로	신청

하동군 고시 제 2012 - 62호

## 군 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 중 광평 도시계획도로(소로 2-30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동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12. 18 .

하 동 군 수

1. 사업시행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하동 군 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광평 도시계획도로(소로 2- 30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연장 100m, 폭원 7.6m(소로2-29호선 일부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하 동 군 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 공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7.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880-22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354 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연 번	공 사 명	위 치			지 목	지 적(m <sup>2</sup> )		지 장 물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지번		총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광평 도시계획 도로(소로2-30호) 개설공사	하동	광평	109-10	대	111	13	1식	하동읍 광평리 110-4	정정자	
2	“	“	“	109-9	대	9	9	“		국(재정 경제원)	
3	“	“	“	110-4	대	417	49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2-10	김진곤	
4	“			110-1	대	222	6	“	하동읍 광평리 110-1	정종석	
5	“	“	“	107-1	대	241	1	“	하동읍 광평리 107-1	권학순	
6	“	“	“	107-2	도	23	23	“	하동읍 광평리 256	이삼룡	
7	“	“	“	113-5	도	7	7	“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504-8	안규상	
8	“	“	“	112-8	전	273	85	“	하동읍 비파리 642-4	김영완	
9	“	“	“	112-1	대	209	28	“	하동읍 광평리 111-3	정문식	
10	“	“	“	111-4	대	164	38	“	하동읍 광평리 111-4	염숙희	
11	“	“	“	111-5	대	163	49	“	하동읍 광평리 111-5	이은숙	
12	“	“	“	111-1	도	63	9	“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504-8	안규상	
13	“	“	“	112-5	전	154	55	“	하동읍 비파리 636-3	박후남	
14	“	“	“	113-6	대	318	182	“	하동읍 광평리 113-7	정수복	
15	“	“	“	113-7	대	119	19	“	하동읍 광평리 113-7	정수복	
16	“	“	“	114-6	전	354	11	“	하동읍 광평리 113-7	정수복	
17	“	“	“	112-6	전	15	15	“	하동군 군청로 23	하동군수	
18	“	“	“	112-14	전	119	119	“	하동군 군청로 23	하동군수	
19	“	“	“	112-15	전	15	15	“	하동군 군청로 23	하동군수	
20	“	“	“	112-12	전	37	37	“	하동군 군청로 23	하동군수	

하동군 고시 제 2012- 63호

## 국가기초구역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하동군 민원과 (☎055-880-20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 하동군수

#### 1.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구역번호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전체 도면		국가기초구역 확대 도면
면적	km <sup>2</sup>	주민 수	명

#### 2.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현황

구역번호	도로명주소	비고

#### 3. 국가기초구역 내 소재한 지번 현황

구역번호	법정동과 지번	다른 기초구역과 겹쳐 있는지 여부(○)	비고

#### 4. 국가기초구역 고시일 : 2012. 12. 21.

#### 5. 문의

하동군 민원과 (☎055-880-2083)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하동군보 게재를 생략하며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2 - 64호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고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확정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4,268,618	323,430,572	838,046	0.26%
일반회계	304,036,950	300,429,219	3,607,731	1.20%
특별회계	20,231,668	23,001,353	△ 2,769,685	△ 12.04%
기타특별회계	20,231,668	23,001,353	△ 2,769,685	△ 12.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53,320	5,317,760	△ 64,440	△ 1.21%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78,010	659,942	118,068	17.89%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378,256	381,709	△ 3,453	△ 0.90%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590,000	590,000	0	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52,980	1,948,258	△ 1,095,278	△ 56.22%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603,400	4,648,205	△ 44,805	△ 0.9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3,100,300	2,904,230	196,070	6.75%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153,029	1,160,384	△ 7,355	△ 0.63%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3,522,373	5,390,865	△ 1,868,492	△ 34.66%

하 동 군 공 보

( 28 ) 제 354 호

2. 세입예산

( 단위 : 천원 )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24,268,618	100.00 %	323,430,572	100.00 %	838,046	0.26%
지방세수입	13,930,000	4.30 %	13,302,000	4.11 %	628,000	4.72%
세외수입	41,527,510	12.81 %	43,207,266	13.36 %	△1,679,756	△3.89%
경상적 세외수입	7,634,583	2.35 %	6,758,146	2.09 %	876,437	12.97%
임시적 세외수입	33,892,927	10.45 %	36,449,120	11.27 %	△2,556,193	△7.01%
지방교부세	144,676,933	44.62 %	137,659,834	42.56 %	7,017,099	5.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00,000	2.47 %	9,000,000	2.78 %	△1,000,000	△11.11%
보조금	116,134,175	35.81 %	120,261,472	37.18 %	△4,127,297	△3.43%
국고보조금	90,144,969	27.80 %	98,380,917	30.42 %	△8,235,948	△8.37%
도비보조금	25,989,206	8.01 %	21,880,555	6.77 %	4,108,651	18.78%

### 3.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분야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24,268,618	100.00 %	323,430,572	100.00 %	838,046	0.26 %
일반공공행정	19,094,496	5.89 %	18,299,030	5.66 %	795,466	4.35 %
공공질서및안전	3,114,018	0.96 %	5,363,561	1.66 %	△2,249,543	△41.94 %
교육	4,104,390	1.27 %	3,195,732	0.99 %	908,658	28.43 %
문화및관광	26,171,505	8.07 %	26,154,109	8.09 %	17,396	0.07 %
환경보호	24,091,606	7.43 %	23,815,234	7.36 %	276,372	1.16 %
사회복지	54,693,652	16.87 %	51,533,259	15.93 %	3,160,393	6.13 %
보건	7,791,848	2.40 %	6,416,485	1.98 %	1,375,363	21.43 %
농림해양수산	68,600,974	21.16 %	73,851,511	22.83 %	△5,250,537	△7.11 %
산업·중소기업	32,190,778	9.93 %	25,917,612	8.01 %	6,273,166	24.20 %
수송및교통	15,337,963	4.73 %	18,298,184	5.66 %	△2,960,221	△16.18 %
국토및지역개발	19,838,093	6.12 %	23,718,363	7.33 %	△3,880,270	△16.36 %
예비비	3,506,518	1.08 %	3,833,192	1.19 %	△326,674	△8.52 %
기타	45,732,777	14.10 %	43,034,300	13.31 %	2,698,477	6.27 %

하동군 고시 제2012 - 65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31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28.

###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2-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20	2007-06-1 2	갑정이라는 마을이름을 사용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경서대로 101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1911	2009-07-1 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173-17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173-178	2011-10-1 7	덕오라는 행정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5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54-1	2008-03-2 8	양구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15	2007-06-1 2	중동리와 서동리의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11	2007-06-1 2	중동리와 서동리의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반영	직권
	이 하	여	백	

하동군 공고 제2012-1067호

##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 12. 10

### 하 동 군 수

개정이유

하동군세 감면조례 제5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시한 도래

주요내용

하동군세 감면조례 제5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참고사항

가. 관련조례 : 하동군세 감면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 : 타시군 공통사항(행정안전부 입법예고안 기준)

##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2-1068호

하수도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2. 12. 10

### 하 동 군 수

#### 1. 공공하수도 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sup>3</sup> /일)	처리방식	처리구역 (km <sup>2</sup> )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신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315-23	70	SNR공법	0.097	분류식	2012.12.10

#### ○ 설계유입수질

처리장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신촌	설 계	130	100	80	40	4.2	200,000
	방 류	6	16	6	16	1.6	1,000

※ ( )안은 겨울철(12월~3월) 방류수질 기준임.

####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신촌마을 공공하수도	방류구 → 곤양천 → 남해

#### 2. 공고 및 열람 기간

2012. 12. 10. ~ 2012. 12. 24(15일간)

#### 3. 기타

-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2 - 1094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2. 12. .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 획 목 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허 가 내 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화개면 용강리 내	이규언	총렵 (자력)	'12. 12. 20 ~ '13. 1. 20일	허가기간 내 까지 100마리 이내
양보면 박달리 내	이금만	총렵 (자력)	'12. 12. 20 ~ '13. 1. 20일	허가기간 내 멧돼지, 고라니 각 5마리 이내

### ○ 포획제외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